국제환경협약의 이해

4차시

1. 폐기물 및 유해화학물질 분야

1.1. 바젤협약과 책임배상의정서

1) 개요

①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따른 인류건강의 위협과 환경파괴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통제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 유해폐기물이 국경 간 이동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인류건강에 대한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 3월 채택
- 주로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개발도상국에서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둠

② 경과

- 1970년대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유해폐기물이 아무런 사전연락이나 협의 없이 국경을 넘어 이동됨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선진국들이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해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에 유해폐기물을 밀수출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국제적으로 문제화 됨
- 이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UNEP 등에서 논의되어 1989년에 바젤협약이 채택되고 1993부터 부속의정서 초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책임배상의정서(Protocol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Resulting from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 and Their Disposal)'가 1999년 타결

③ 협약의 결과

- 유해폐기물의 국제교역 규제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유해폐기물 수입을 사전 통제

- 선진국은 대내적으로 환경보호단체 및 여론에 부응하며 대외적으로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개발도상국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

④ 협약의 주요 내용

- 규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의 범위가 국가마다 다르면 통일적 규제가 어려우므로 폐기물의 폐기경로와 함유되는 물질 등 양 측면에서 규제해야 할 유해폐기물의 범위 설정

- 가입국들은 규제대상 물질의 국경 간 이동금지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자국 영토 내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국 영토 내에 충분한 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

- 수출규제 측면에서 가입국은 해당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 국가에 대해 수출을 해서는 안되고,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규제대상 폐기물의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남극지역에서 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

2) 우리나라 관련

① 우리나라는 1994년 2월에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협약의 내용에 따른 국내 폐기물관리 정책 진전

② 유해폐기물 규제와 관련하여 전체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통한 총량적 접근 필요

③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의 규정에 대해 보험업계 및 폐기물 수출업계의 지속적 대응책 강구 필요

1.2. 로테르담협약

1) 개요

① 로테르담 협약은 유해화학물질 사전통보승인과 관련된 협약

-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화학물질 교역이 증가하면서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위험 우려가 증가하여, 1987년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보의 상호교환을 통해 화학물질의 국제 거래서 각국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능력 제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UNEP과 FAO 공동주관으로 '런던 가이드라인' 채택

- 이후 1989년 UNEP과 FAO는 수입국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유해화학물질이나 살충제 교역 시 수출전 사전통고승인(PIC: Prior Informed Consent) 절차를 채택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 1998년에는 법규화를 통해 '국제 교역되는 유해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로테르담 협약(The Rotterdam Convention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cedure for Certain Hazardous Chemicals and Pesticides in International Trade)' 채결

② 사전통보승인(PIC)

- PIC는 참여국가가 자국으로 수입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의 특성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이러한 화학물질의 수입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며, 타국가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절차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수출국가와 수입국가 공동의 책음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지님

2) 우리나라 관련

① 우리나라는 1999년 9월 협약에 서명하였고, 협약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하여 자발적으로 PIC 절차 규정상의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 생산 및 수출 금지

② 중장기적으로 PIC 대상물질의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국내 영향 검토 필요

2. 해양분야

2.1. 런던협약

1) 개요

① 런던협약은 해양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 런던협약(London Convention)의 공식명칭은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1950년대와 1970년대 사이 대규모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양오염이 범지구적 문제로 떠오르고 1970년대 초반 해양이 무한한 정화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인식의 대두로 1972년 런던협약 채택, 1975년에 발효
- 해양환경 분야 최초의 범지구적 협약이며, 여타 해상오염원 규제를 위한 국제법 규범의 기준을 제시

② 적용 폐기물

- 본 협약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의 고의적 해상 폐기와 그 구조물로부터의 폐기물 또는 기타물질의 고의적 해상 폐기가 적용대상
- 선박, 항공기, 플랫폼 등의 통상적 운용에 수반되는 해상폐기와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서 발생한 폐기물 투기는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음

2) 우리나라 관련

①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하여 1994년에 발효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가능품목을 별도 지정하는 Positive Listing System 운용
- 서해가 폐쇄 해역이며 중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유입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동해에 대한 투기량 증가

② 해양오염 관련 지속적인 배출처리기준과 평가제도 등 국내 제도의 지속적 정비 필요

2.2.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

1) 개요

①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육상활동 규제에 관한 실천계획

- 공식명칭은 '육상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Global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Activities)'

- 해양오염의 약 80%가 인간의 육상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에 따라 리우회의의 Agenda 21 중 해양보호에 관한 제17장의 구체화를 위해 1995년 미국 워싱턴에서 본 실천계획과 이의 이행을 위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 채택
- 본 실천계획에서 규정하는 육상활동에 기인한 오염은 하수(sewage),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방사성물질(radioactivity), 중금속(heavy metal), 유류(oil), 영양염류(nutrients), 침전퇴적물(sediment mobilization), 쓰레기(litter), 서식처 파괴 및 물리적 변형(physical alteration & destruction of habitats)

② 범지구적 실천계획의 성격

- 엄격한 의미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soft law로서 새로운 국제법이 형성되기 전 단계 형태의 규범으로 해석 가능
-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되는 행동을 한 국가는 국제여론의 비난과 압력을 받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 조치를 취할 경우 실질적 효력 발휘 가능

2) 우리나라 관련

① 우리나라에서도 육상활동에 따른 해수의 부영양화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본 실천계획과 관련해서 적극적 대응 필요

② 육상오염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해 유관부터 및 연구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체게 구축 필요

3. 산림분야

3.1. 사막화방지협약

1) 개요

① 공식명칭은 '심각한 가뭄 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in Those Countries Experiencing Serious Drought and/or Desertification, Particularly in Africa)'

-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이를 위한 재정체계 수립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3년 5월부터 1994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친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로 채택

-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협약에 서명, 1999년 8월 비준

② 협약의 내용

- 본 협약의 배경은 '리우선언'의 Agenda 21에서 사막화방지를 위한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법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 협약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무사항과 사막화 피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한 고려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이들 국가에의 지식 및 기술 제공에 대한 내용 포함

- 사막화 현상은 산림황폐화, 토양침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미, 중동, 러시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인접국가 중국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경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고려사항

①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산림녹화, 화학비료와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및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시책들과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화방지의 범지구적 논의에 동참 가능

②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는 중국 고비사막 및 타클라마칸사막에서 발생하는 황사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 수립과 북한 산림황폐화 등 동북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역적 협력 증진이 요구됨

3.2. 국제열대목재협정과 산림원칙선언

1) 개요

① 국제열대목재협정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훼손 등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온실가스 흡수원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수적인 산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의 시작

- 1970년대에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열대목재 생산국의 산림 황폐화 속도에 대한 우려로 열대목재의 원활한 생산 및 무역거래촉진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달성이라는 전 지구적 당면과제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1976년부터 국제열대목재협정 협상에 착수
- 1983년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이 채택되고 1985년에 발효
- 우리나라는 1985년 6월에 가입하고 1994년에 비준

② 산림원칙선언

- 세계의 산림자원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산림의정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의견대립으로 산림보전의 기본원칙인 '산림원칙선언' 채택
- 공식명칭은 '모든 산림의 관리,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전 지구적 합의를 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제원칙 선언(Non-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s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
- 선진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산림의정서 제정을 강력히 주장, 개발도상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산림 벌채의 불가피성과 목재 수출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이유로 의정서 제정에 반대
- 전문에서는 산림분야가 지속적인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모든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천명하고, 모든 국가가 자국의 능력 범위 내에서 국제협력에 노력할 것을 강조

2) 영향

① '국제열대목재협정'과 '산림원칙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sustainable forest management)가 산림개발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판단기준이 되는 기준과 지표 개발 논의가 본격화
- 이후 구속력 없는 '산림원칙선언'이나 열대림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열대목재협정'을 보완하는 모든 산림에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포괄적

산림협약 제정에 대한 검토가 유엔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됨

② 열대목재 소비가 많은 우리나라는 목재교역이 제한을 받을 경우 영향을 받는 국가이므로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

- 국제동향을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목재수입 다양화, 국내 중장기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 고려 필요